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2차)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제2항 제1호에 의거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이사·소재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 등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제 목 :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2차)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1. 19. ~ 2020. 12. 8.(20일간)
3. 공시송달 내용 :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2차) 사전통지서

연번	법인명	대표자	산림사업법인 등록번호	산림사업 종류	사전통지 내용
1	(주)디엠	김*채	①경남2020-006 ②경남2020-007	①산림토목 ②숲길 조성·관리	불임 문서 참조
2	(주)송백	임*수	경남2014-01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불임 문서 참조
3	주식회사 성립	김*기	전남2019-040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불임 문서 참조

4.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처분이 확정됨.

①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2차) 사전통지서 - (주)디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2차)					
2. 당사자	성명(명칭)	(주)디엠 대표 김*채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53, 2층 202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제2항 제1호에 의거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미충족(기술인력 미충족)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산림사업법인 영업정지 3개월(2차)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법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p> <p>②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법 시행규칙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p> <p>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천2백5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p>					
6.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관명	경상남도	부서명	산림복지과	담당자	박찬우
		주 소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경남도청서부청사 산림복지과			전화번호	055-211-6834
		전자우편 주소	gate61@korea.kr			FAX	055-211-6819
	제출기한	2020. 12. 8일 까지					

②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2차) 사전통지서 - (주)송백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2차)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송백 대표 임*수					
	주 소	경남 진주시 도동로248번길 9-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제2항 제1호에 의거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미충족(기술인력, 사무실 등 미충족)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산림사업법인 영업정지 3개월(2차)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법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p> <p>②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법 시행규칙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p> <p>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천2백5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p>					
6.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관명	경상남도	부서명	산림녹지과	담당자	박찬우
		주 소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경남도청서부청사 산림녹지과			전화번호	055-211-6834
		전자우편 주소	gate61@korea.kr			FAX	055-211-6819
	제출기한	2020. 12. 8일 까지					

③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2차) 사전통지서 - 주식회사 성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2차)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식회사 성림 대표 김*기					
	주 소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948번길 18, 2층 202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제2항 제1호에 의거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미충족(기술인력, 사무실 등 미충족)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산림사업법인 영업정지 3개월(2차)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법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p> <p>②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법 시행규칙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p> <p>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천2백5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p>					
6.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관명	경상남도	부서명	산림녹지과	담당자	박찬우
		주 소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경남도청서부청사 산림녹지과			전화번호	055-211-6834
		전자우편 주소	gate61@korea.kr			FAX	055-211-6819
	제출기한	2020. 12. 8일 까지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산림녹지과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청문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경상남도청 산림복지과 산림 보호담당 ☎ 055-211-68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